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정기)

장 기 요 양 기 관 명	(A+)합천재가복지센터	장 기 요 양 기 관 기 호	34889000089
급 여 종 류	방문목욕	대 표 자	심정원
평 가 년 도	2024	평 가 등 급	정기평가 A(최우수)

구 분	총 점	기관운영	환경및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	제공결과	가점
환산점수 (배점비중)	100.00	20.00	10.00	22.00	34.00	14.00	
점 수	99.60	20.00	10.00	22.00	34.00	13.60	
전체평균	82.26	15.39	9.33	18.35	28.64	10.52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 가산지급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며, 가산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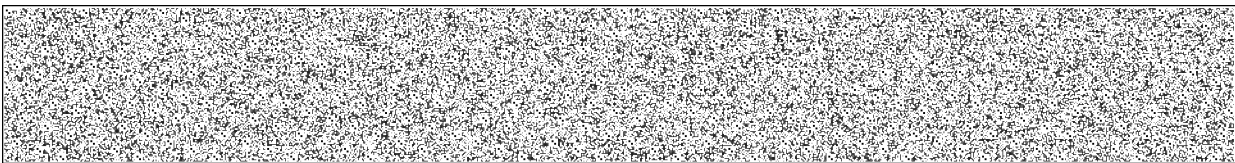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제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기획실 요양법규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 ※ 제출방법 : ① 방문, 우편, 팩스(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지 제32호 서식)
②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정기)

장 기 요 양 기 관 명	(A+)합천재가복지센터	장 기 요 양 기 관 기 호	34889000089
급 여 종 류	방문요양	대 표 자	심정원
평 가 년 도	2024	평 가 등 급	정기평가 A(최우수)

구 분	총 점	기관운영	환경및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	제공결과	가점
환산점수 (배점비중)	100.00	20.00	9.00	22.00	31.00	18.00	
점 수	99.60	20.00	9.00	22.00	31.00	17.60	
전체평균	80.63	13.91	8.28	19.20	25.53	13.68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 가산지급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며, 가산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제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기획실 요양법규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 ※ 제출방법 : ① 방문, 우편, 팩스(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지 제32호 서식)
②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본

